

외국인등록증 발급

- 한국에 91일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제출서류 : 신청서, 여권 규격의 컬러 증명사진, 여권, 수수료 3만원, 재학증명서*
- * 은행계좌 개설, 숙소 임차 등의 사유로 입학 전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금 납입증명서로 대체가능

